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4가단12598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5.

판결 선고2024. 10. 10.

주 문

1. 피고는, 원고로부터 7,400,000원에서 2024. 6. 6.부터 아래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650,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, 원고에게 별지목록 (1) 표시 부동산 중 별지목록 (2)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C호 부분(29.75m²)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, 제194조)

판사김영수

별지

1) 원고는 '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..'라고 기재하고 있으나, 이는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고, 잔여 보증금 740만 원에서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바로 잡는다.